

청구방법을 다양하고 쉽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향후 접수절차의 편리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 하자있는 청구남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시정권고는 자체심의를 통해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보도에 한해 이뤄졌으나, 향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특정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들이 시정요구해 올 경우 심의기준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준위반여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 구제나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주장은 언론자유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재완, 2004; 박용상, 2004; 이신, 2004)

▶언론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고, 판례로 형성된 언론의 면책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고, 언론피해의 구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윤리적 판단사항들이 법으로 강요되고 있다.

▶공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매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피해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단일화되는 것도 아니며, 또 단일화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을 판정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중재위 원래의 설립취지, 즉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라는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시정권고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고, 시정권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후검열이 될 수 있다.

6.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언론중재제도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인들로부터 필요성과 중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5%를 넘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 2004)

<표 1>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단위: %)

	신청인	피신청인
필요하다	95.4	97.8
필요없다	4.6	2.2
무응답	-	0
총계	100.0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 조사.”

한국언론재단이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2004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비율이 일반시민은 92%, 언론인은 97%에 달했다. (주동황외, 2004),

언론중재 이용자들은 중재위원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피신청인인 언론인들이 신청인보다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표 2> 언론중재위원의 중재 중립성 (단위: %)